

부천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심사경과

1. 심사일정

- 가. 제 안 자 :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94. 10. 17
 다. 상정일자 : 95. 3. 24
 라. 의결일자 : 95. 3. 24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나. 내 용
- 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가산금 강화
 - 해당 주차요금의 2배 ⇒ 해당 주차요금의 4배
 - 주차요금 적용 급지구분 세분
 - 2급지 ⇒ 3급지
 - 노상주차장의 경우 일일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 폐지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조항 신설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주차요금의 50% 감면
 - 부설주차장 의무설치 기준 강화

3. 질의및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근린생활 지역과 단독주택지역의 규제는 조금 완화하여도 괜찮은지	• 조금 완화하여도 타당하다고 봄.

4. 토론요지

- 가. 반대로론 : 날로 증가하는 차량의 주차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례를 더욱 강화

하여 불법 주차를 막는 것이 좋겠음.

나. 찬성토론 : 주차난에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나 개인의 재산을 너무 침해하는 것 같아
개정안을 조금 완화조치 시킴이 타당.

5. 수정안내용 : 근린생활지역과 단독주택지역에 한하여 조금 완화

6. 소수의견요지 : 없 음

☐ 심사결과 : 수정가결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307
의 결 년 월 일	95. 3. 24

제출년월일 : 95. 3. 24

제 출 자 : 사회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 주차장법 개정으로 현행 주차장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다시 정하고 도시교통란 완화 및 주차수요 확충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 특히, 근린생활지역과 단독주택 지역은 부천시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시민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사항이라 수정하게 되었음

2. 주요골자

- 제13조 별표2 중 근린생활지역과 단독주택지역의 주차장 확보 면적기준을 약화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 별표2 근린생활시설란 중 “120m”를 각각 “150m”로, 단독주택란 중 “225m”를 각각 “300m”로, “150m”를 각각 “200m”로 한다.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7
의 결 년 월 일	95. 3. 28 (제36회)

제출년월일 : 94. 10. 17

제 출 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주차장법개정(91. 12. 14 법률 제4437호)으로 현행 주차장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다시 정하고,
- 도시교통난 완화 및 주차수요 확충을 위한 정부시책의 적극적인 시행과 상급기관의 주차장 조례개정지침이행

☐ 주요골자

- 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가산금 강화
 - 해당 주차요금의 2배 → 해당 주차요금의 4배로
- 주차요금 적용 급지구분 세분
 - 2급지 → 3급지로
- 노상주차장의 경우 일일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 폐지
 - 주차장 이용율 극대화 및 장기주차 억제를 위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조항 신설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주차요금의 50% 감면
 - 자가용승용차로서 10부제 운행 실천차량 : 주차요금의 50% 감면
- 부설주차장 의무설치기준 강화

붙임 1.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참고자료 1부 끝.

[수정안 포함]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 2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 외에 해당 주차요금의 4배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내지 제10조”를 “제7조 내지 제9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3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7조 제5항중 “건설부장관”을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내지 제21조”를 “제10조 내지 제1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 원)

구 분	급 지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30분마다)	일일주차권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노 상	1 급 지	400	—	—	—
	2 급 지	300	—	—	—
	3 급 지	300	—	—	—
노 외	1 급 지	400	6,000	50,000	40,000
	2 급 지	300	4,000	40,000	30,000
	3 급 지	300	4,000	40,000	30,000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 가. 하절기(4월~10월) : 08:00 ~ 20:00
 - 나. 동절기(11월~3월) : 09:00 ~ 19:00
3. 급지구분
 - 가. 1급지 : 심곡 1, 2동, 원미 1, 2동, 역곡 1, 2, 3동, 춘의동, 도당동, 심곡본, 1동, 송내1동, 원종1, 2동 중 주차장 정비지구에 포함된 지역
 - 나. 2급지 : 주차장 정비지구 내의 1급지 이외의 지역
 - 다. 3급지 : 주차장 정비지구 외의 지역
4. 주차요금의 요율
 - 가.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의 이용율을 극대화하고 장기주차 억제를 위해 일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은 운용하지 않는다.
 - 나. 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수요가 대폭 증가되는 지역의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발부한 장애인 수첩, 장애인 증명 또는 국가유공자증서를 제시한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 나. 자가용승용차로서 차량 10부제 운행 실천차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부한 증명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별표2」

부설주차장설치기준

시 설 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 제외 시설물
숙박시설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1.5개실당 1대+부대운동시설별 산정대수+기타부대시설면적 30m ² 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100m ² 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m ²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m ² 미만인 시설물
의료시설	종합병원	2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90m ² 당 1대로 산정된 대수 중 많은 대수	
	기 타	시설면적 100m ² 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m ²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m ² 미만인 시설물
운수시설	공항시설, 버스 터미널, 철도역	시설면적 100m ² 당 1대	면적 100m ² 미만인 시설물
	기 타	상업지역 : 시설면적 100m ² 당 1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150m ² 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180m ² 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m ² 미만의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m ² 미만인 시설물
판매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시설면적 60m ² 당 1대	면적 60m ² 미만인 시설물
	기 타	시설면적 75m ² 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75m ² 당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m ² 미만인 시설물

시 설 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 제외 시설물
운 동 시 설	골 프 장 1홀당 15대	
	골프 연습장 0.7 타석당 1대	
	옥외 수영장 정원 11인당 1대	
	상업지역 : 시설면적 100m ² 당 1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120m ² 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150m ² 당 1대	
관 람 집 회 시 설	운동경기관람장 수용인원 100인당 1대	
	예 식 장 시설면적 40m ² 당 1대	면적 40m ² 미만인 시설물
	기 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75m ² 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100m ² 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75m ²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m ² 미만인 시설물
위 탁 시 설	유흥음식점 시설면적 60m ² 당 1대	면적 60m ² 미만인 시설물
	기 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75m ² 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100m ² 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75m ²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m ² 미만인 시설물
업 무 시 설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75m ² 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100m ² 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75m ²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m ² 미만인 시설물

시 설 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 제외 시설물
종교시설, 전시시설, 통신촬영시설, 창고시설	시설면적 100m ² 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m ²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m ² 미만인 시설물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120m ² 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50m ²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m ² 미만인 시설물
단 독 주 택	건축면적 300m ² 이하는 1대 건축면적 300m ² 초과인 경우는 1대에 300m ² 를 초과한 200m ² 당 1대를 더한 대수	면적 200m ² 미만인 건축물
공 동 주 택	건축면적 112.5m ² 당 1대	면적 112.5m ² 미만인 시설물
기 타 건 축 물	시설면적 200m ² 당 1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m ² 미만 인 시설물 기타지역의 경우는 면적 600m ² 미만인 시설물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② (생 략)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② (생 략)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② (현행과 같음)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② (현행과 같음)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 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③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정 당한 이유없이 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 2 규정 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 외에 해당주차요금의 4배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 과한다.	③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정 당한 이유없이 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 2 규정 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 외에 해당주차요금의 4배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 과한다.	③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정 당한 이유없이 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 2 규정 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 외에 해당주차요금의 4배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 과한다.	③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정 당한 이유없이 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 2 규정 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 외에 해당주차요금의 4배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 과한다.
1~2 (생 략)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7조(삭제)	(삭제)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방법) (생략)	제7조(현행 8조와 같음)
제9조(이용제한) (생략)	제8조(현행 9조와 같음)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생략)	제9조(현행 10조와 같음)
제11조(삭제)	(삭제)
제12조(주차장설치심의등) (생략)	제10조(현행 12조와 같음)
제17조(생략)	제17조(현행과 같음)
①~④ (생략)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계식 주차장 중 2단식 주차장은 상·하 2대의 자동차 중 다른 1대의 자동차를 차로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주차구역에 자동차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차구획은 자동식 기계장치에 의하여 작동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⑤ <u>교통부장관</u>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주차장 설치기준) (생략)	제11조(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주차장 정비구역 안에 건축하는 주차 전용 건축물 설치) (생략)	제12조(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기준) (생략)	제13조(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생략)	제14조(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생략)	제15조(현행 제17조와 같음)
제18조(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생략)	제16조(현행 제18조와 같음)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생략)	제17조(현행 제19조와 같음)
제20조(과징금 처분) (생략)	제18조(현행 제20조와 같음)
제21조(과태료 처분) (생략)	제19조(현행 제21조와 같음)

<참고자료>

공영주차장요금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단위: 원)

구분	금지	1회주차 요금 (1구획당 30분마다)	일 일 주차권	월정기권	
				주간	야간
노상	1금지	400	6,000	60,000	40,000
	2금지	300	4,000	40,000	30,000
	1금지	400	6,000	50,000	40,000
노외	2금지	300	4,000	40,000	30,000

구분	금지	1회주차 요금 (1구획당 30분마다)	일 일 주차권	월정기권	
				주간	야간
노상	1금지	400	-	-	-
	2금지	300	-	-	-
	3금지	300	-	-	-
노외	1금지	400	6,000	50,000	40,000
	2금지	300	4,000	40,000	30,000
	3금지	300	4,000	40,000	30,000

-비 고-

-비 고-

1. 이 주차 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1. 이 주차 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하절기 (4월~10월) 08 : 00 ~ 20 : 00

가. 하절기 (4월~10월) 08 : 00 ~ 20 : 00

현	개	정(안)
나. 동절기 (11월 ~ 3월) 09: 00~19: 00	나. 동절기 (11월~3월) 09: 00~19: 00	
3. 급지구분	3. 급지구분	
1급지: 도심의 주차수요가 왕성한 지역 및 주차의 여제가 강하게 요구되는 지역으로 2급지 이외지역	가. 1급지: 삼곡1, 2동, 원미1, 2동, 역곡1, 2, 3동, 춘의동, 도당동, 십곡본, 1동, 송내1동, 원종1, 2동 중 주차장 정비지구에 포함된 지역	
2급지: 주차수요가 한산한 외곽지역으로 범박동(계수리), 상동(신상리), 오정동(대장리, 오쇠리)지역	나. 2급지: 주차장 정비지구 내의 1급지 이외의 지역	
	다. 3급지: 주차장 정비지구 외의 지역	
4. 주차요금의 차등화	4. 주차요금의 요율	
가. 차량유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시간에 따른 차등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가.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의 이용율을 극대화하고 장기주차 억제를 위해 일일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은 운용하지 않는다.	
나. 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수요가 대폭증가는 지역의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나. 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수요가 대폭 증가되는 지역의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가.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발부한 장애인 수첩, 장애인증명 또는 국가유공자 종서를 제시한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주차 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나. 자기용 승용차로서 차량10부제 운행 실천차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부한 증명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주차 요금의 50%를 경감한다.	

<참고자료>

부설주차장설치기준 신·구조문대비표

시 설 물	현		경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 제외시설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 제외시설물
숙 박 시 설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2개실당1대+부대운동시설 별산정대수+기타부대시설 면적 40㎡당 1대	1.5개실당 1대+부대운동시 설별산정대수+기타부대시 설면적 3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 10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 미만인 시설물, 상업 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 미만인 시설물
의 료 시 설	중 합 병 원	3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 와 시설면적 120㎡당 1대로 산정된 대수 중 많은 대수	2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 와 시설면적 90㎡당 1대로 산정된 대수 중 많은 대수	
	기 타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 10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 미만인 시설물, 상업 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 미만인 시설물

시 설 물	현		정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 제외시설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 제외시설물
공항시설, 버스 터미널, 철도역	시설면적 150㎡ 당 1대	면적 150㎡ 미만인 시설물	시설면적 100㎡당 1대	면적 100㎡ 미만인 시설물
은 수 시 설	기 타	상업지역 : 시설면적 150㎡ 당 1대	상업지역 : 시설면적 100㎡ 당 1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150 ㎡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180㎡ 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 미만인 시설물, 상업 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 미만인 시설물
	백화점, 쇼핑센터	시설면적 80㎡당 1대	시설면적 60㎡당 1대	면적 60㎡ 미만인 시설물
관 대 시 설	기 타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 75㎡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75㎡ 미만인 시설물, 상업 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 미만인 시설물
	골 프 연 습 장	1홀당 10대	1홀당 15대	
은 동 시 설	골 프 연 습 장	1타석당 1대	0.7타석당 1대	
	우 외 수 영 장	정원 15인당 1대	정원 11인당 1대	

시 설 물	정		
	원	형	개
기 타	상업지역: 시설면적 150㎡ 당 1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시설면적 200 ㎡당 1대 기타지역: 시설면적 250㎡ 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50㎡ 미만인 시설물, 상업 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400㎡ 미만인 시설	상업지역: 시설면적 100㎡ 당 1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시설면적 120 ㎡당 1대 기타지역: 시설면적 150㎡ 당 1대
운동경기관람장			
예 식 장	수용인원 150인당 1대	면적 60㎡ 미만인 시설물	수용인원 100인당 1대
기 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시설면적 100㎡당 1대 기타지역: 시설면적 150㎡ 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 미만인 시설물, 상업 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400㎡ 미만인 시설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시설면적 75㎡당 1대 기타지역: 시설면적 100㎡ 당 1대
관 람 집 회 시 설			
유 홍 음 식 점	시설면적 80㎡당 1대	면적 80㎡ 미만인 시설물	시설면적 60㎡당 1대
위 락 시 설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시설면적 100㎡당 1대 기타지역: 시설면적 150㎡ 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 미만인 시설물, 상업 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40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시설면적 75㎡당 1대 기타지역: 시설면적 100㎡ 당 1대
정			
설치대상 제외시설물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75㎡ 미만인 시설물, 상업 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 미만인 시설			

시 설 물	현			정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 제외시설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업 무 시 설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100㎡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150㎡ 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 미만인 시설물, 상업 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40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75㎡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100㎡ 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75㎡ 미만인 시설물, 상업 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 미만인 시설물
종교시설, 전지시설, 통신촬영시설, 창고 · 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50㎡ 미만인 시설물, 상업 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400㎡ 미만인 시설물	시설면적 10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 미만인 시설물, 상업 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 미만인 시설물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250㎡ 미만인 시설물, 상업 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400㎡ 미만인 시설물	시설면적 12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20㎡ 미만인 시설물, 상업 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 미만인 시설물
단 독 주 택	건축면적 300㎡ 이하는 1 대 건축면적 300㎡ 초과 경우는 1대에 300㎡를 초 과하는 200㎡당 1대를 더 한 대수	면적 200㎡ 미만인 건축물	건축면적 225㎡ 이하는 1 대 건축면적 225㎡ 초과 경우는 1대에 225㎡를 초 과하는 150㎡당 1대를 더 한 대수	면적 150㎡ 미만인 건축물

시 설 물	현		정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 제외시설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 제외시설물
공 동 주 택	건축면적 150㎡당 1대	면적 150㎡ 미만인 시설물	건축면적 112.5㎡당 1대	면적 112.5㎡ 미만인 건축물
기 타 건 축 물	시설면적 300㎡당 1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400㎡ 미만인 시설물 기타지역의 경우는 면적 600㎡ 미만인 시설물	시설면적 200㎡당 1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 미만인 시설물 기타지역의 경우는 면적 600㎡ 미만인 시설물